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8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차규근의원안, 정부안)	2

I.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8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5. 22.
- (3) 회 부 일 : 2025. 5.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4조의10제1항제1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차규근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264의10) ☐ 정보제공 요청 가능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 정보 - 위반 물품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 <신 설> ☐ 정보 요청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조 의무	☐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 등 ☐ 정보제공 요청 주체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장 (<u>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 포함</u>)(정부안) ☐ 정보제공요청 범위 확대 - <u>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 정보 (차규근의원안)</u> - <u>법정 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 정보 (정부안)</u> ☐ (현행과 같음)

* 차규근의원안 2025. 5. 22. 발의(의안번호 1058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차규근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

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대해 해당 정보의 제공을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대한 해당 정보의 제공을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보제공 요청 가능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더불어 그 권한 및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동 규정은 ①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물품의 국내유통정보를 관세청이 제공받아 수출입 통관단계의 위험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개정 당시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경우 관계기관 간 협조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각 중앙행정부처는 국민안전, 국내산업의 육성²⁾ 및 국제 수출 통제체제³⁾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수출입 승

1) 「관세법」

제264조의10(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제1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국내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폐섬유, 석탄재, 폐타이어 등 수입금지

3)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인 및 허가 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하여 미허가 물품등의 국내로의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구비조건·성분 등 법령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반물품에 대한 정보 등도 관세청에 제공하여 동일 물품의 추가적인 반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 따르는 수출입 물품의 안전 관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 되거나 수출입 규제 대상이 아닌 HS번호로 수출입 신고되는 물품 등 우회하여 수출입 하는 물품들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⁴⁾

- 이에 개정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불허) 또는 반려한 물품에 대한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관세청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관련 위험정보를 선제적으로 보유하고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반출입을 최소화하여, 국민안전과 기업권익의 보호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기존의 ‘위반’ 물품 관련 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가 자체 위험성을 평가하여 수출입을 반려·불허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게 요청하여 이를 수출입 통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적극적인 위험관리⁵⁾가 가능해

4)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번호로 수출입 신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나 해당 물품은 기존의 ‘위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사전 선별검사가 곤란한 상황임.

질것으로 보임. 최근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불허 반려 정보를 공유 받아 관세법상 범칙 혐의 등을 조사한 바 있음.⁶⁾

[중앙행정기관과 불허·반려 정보 공유를 통한 관세청 위험관리 사례]

- ① ‘수입금지 폐기물’ 불법반입 위험 분석
(환경부로부터 수출입폐기물품의 불허·반려·취소 현황 공유)
-> 반려 등으로 수입이 제한된 품목을 허가가 필요 없는 품목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우회수입 여부를 조사하여 일선 세관에서 관련자에 대해 조사 지시
- ② ‘상황허가 반려물품’ 불법 수출위험 분석
(무역안보관리원으로부터 상황허가 반려 내역 공유)
-> 품목코드(HS코드) 허위 신고를 통한 수출규제 회피 여부를 조사 중

자료: 관세청

□ 다만, 차규근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 또는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를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규근의원안에 따른 경우 법령에 따른 사유가 아닌 각 행정청의 재량으로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 또는 반려한 물품에 대한 정보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는 현행 조문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 제공 목적이 명확하도록 정부안과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으로 그 범

5) 정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위반 물품 및 반려·불허 물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고, 관세청 국경 위험관리센터는 우범성 물품을 사전에 지정하여, 일선 세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신고시 우범성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6)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정보 요청범위와 확대와 관련하여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입장임

[산업부] 상황허가 신청 불허/반려 정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불허/반려 정보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불허/반려 정보,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거래 불허/반려 정보

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